학교생활인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 규정은 '원종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이라 한다.
2. 학교생활인권 규정 중 '학생생활교육 규정', '학생자치 규정', '동아리생활 규정'등은 별도로 편성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체벌금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2010.10.05.)에 근거한다.

제4조【구현방안】

1. 제2조(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의 기본 개념에 입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수립 및 학교생활인권 규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반 학교 규정 및 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2.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학교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1.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7조 2항의 절차에 의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6조【책무】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은 공동체 생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을 배려할 책임을 갖는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7조【학생의 권리】

1. 학생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체벌, 차별, 폭력 및 위협, 편견, 사생활 침해가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4.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자유롭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5.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제공, 최상의 적정한 치료, 생리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등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6.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권리와 학생 본인 기록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권리 그리고 기록의 취급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8.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윤리관 등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나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0.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 활동 등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권리가 있다.
11.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12.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생은 복지를 비롯해 그 특성에 따라 요청 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13.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4. 각종 학교 규정과 관련한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기회, 결과 통보,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5. 인권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의 연수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6.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공익을 위반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할 권리와 CCTV에 노출되지 않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학생의 책임】

1.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학교 정책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여 자신의 모든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예절을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해야 한다.
4. 학교의 재산 및 사적, 공적인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5. 일체의 학교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성 평등 의식 등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여야 한다.
7.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8.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9. 무기,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10.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및 성향, 종교, 출신국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신념 상태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기본예절을 지키고 존중하며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11. 학교에서의 학습 진행과정· 사회적· 교육적 행사를 포함한 학교 관련 사안들을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보호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12. 그린 존 구역 규정을 위배하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복장】

1. 교복은 제7조 2항의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교복을 단정히 입는다.
2. 혹한기에는 동복 착용 위에 방한복을 허용한다. 단, 동절기 교복 위 외투를 입을 때 불편한 경우 교복재킷을 벗고 입을 수 있다.
3. 여학생이 바지 착용을 희망할 경우 교복 바지를 허용한다.
~~4.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하복 : 6월 초 ~ 9월 중순~~
~~나. 춘추복 : 5월 초 ~ 5월 말, 9월 중순 ~ 10월 중순~~
~~다. 동복 : 10월 중순 ~ 다음 해 4월~~
~~라.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체질에 따라 담임교사의 확인 후 착용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5 교복 착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하복은 하복 바지(치마) 또는 하복 체육복 위에 생활복을 착용한다.
나. 춘추복은 동복 바지 또는 치마 위에 와이셔츠, 넥타이(학년별 해당 넥타이), 조끼를 착용한다.
다. 동복은 춘추복에 교복 상의를 착용한다.

제10조【두발 및 용의】

1.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다.
2.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지 않는다.
3. 두발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발 및 용의는 제7조 2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염색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5. 색조 화장은 금한다.
6. 용의 위반이 과도한 경우 학교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교육시간】

1.학교에서 정한 교육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소정 양식의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교육시간 지도교사의 허가가 되지 않은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하며, 개인 사물함 및 가방 속에 보관하며,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3. 이동 수업 및 특별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에는 구비된 휴대폰 보관가방을 사용하며 교사가 상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한다.
4. 수업 중 무단으로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교 학생생활교육 기준에 의거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한다.

제 12조【흡연】

1. 흡연을 했다고 의심이 되나 흡연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자신이 흡연을 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도록 흡연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다.
2. 지도교사의 흡연 측정 요청 시 측정을 거부할 경우 흡연 1회로 처리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2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구성원을 만나면 상호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일과 중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혹은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13조【보호자의 역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14조【소지품 검사】 유해한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제·개정

제14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22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 1990. 03. 07

1차 개정 : 1990. 03. 13.

2차 개정 : 1990. 08. 13.

3차 개정 : 1991. 04. 22.

4차 개정 : 1992. 09. 21.

5차 개정 : 1995. 12. 01.

6차 개정 : 1996. 12. 02.

7차 개정 : 1997. 05. 11.

8차 개정 : 1998. 04. 01.

9차 개정 : 1999. 03. 15.

10차 개정 : 2000. 04. 07.

11차 개정 : 2001. 04. 04.

12차 개정 : 2002. 02 .18.

13차 개정 : 2003. 04. 03.

14차 개정 : 2003. 06. 30.

15차 개정 : 2004. 10. 01.

16차 개정 : 2005. 05. 09.

17차 개정 : 2007. 06. 07.

18차 개정 : 2008. 02. 23.

19차 개정 : 2009. 04. 06.

20차 개정 : 2009. 06. 26.

21차 개정 : 2011. 02. 18.

22차 개정 : 2011. 05. 24.

23차 개정 : 2011. 09. 26.

24차 개정 : 2011. 11. 08.

25차 개정 : 2014. 05. 08.

26차 개정 : 2015. 04. 14.

27차 개정 : 2015. 07. 23.

28차 개정 : 2016. 07. 15.

29차 개정 : 2018. 04. 13.

30차 개정 : 2019. 05. 24 .

31차 개정 : 2020. 06. 12